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 예산액	증감액
합 계	5,183,982,068	4,826,758,741	357,223,327
일 반 회 계	4,456,612,206	4,165,065,400	291,546,806
특 별 회 계	727,369,862	661,693,341	65,676,521
기 타 특 별 회 계	425,585,493	424,114,821	1,470,672
농어촌주택사업	10,207,810	10,207,810	0
의료급여기금	385,347,683	383,877,011	1,470,672
동부권특별회계	30,030,000	30,030,000	0
공 기 업 특 별 회 계	301,784,369	237,578,520	64,205,849
지 역 개 발 기 금	301,784,369	237,578,520	64,205,84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,279,28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